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소형 박리기업 소득세 우대정책 관련**  **문제에 대한 통지**  財稅 [2011] 117호  각 성, 자치구, 직할시, 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(국)과 국가세무국, 지방세무국,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:  소형 박리기업의 발전을 한층 더 지원하기 위해, 국무원의 승인을 얻고 소형 박리기업 소득세 정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.  1. 2012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간 과세대상소득금액이 6만 위안(6만 위안 포함) 미만인 소형 박리기업은 그 소득에서 50%를 차감하여 과세대상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%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.  2. 이 통지에서 지칭하는 소형 박리기업이란 《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》 및 그 실시조례, 그리고 관련 조세 정책규정에 부합되는 소형 박리기업을 가리킨다.  위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.  재정부  국가세무총국  2011년 11월 29일 |  | **关于小型微利企业所得税优惠 政策有关问题的通知**  财税〔2011〕117号    各省、自治区、直辖市、计划单列市财政厅（局）、国家税务局、地方税务局，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：  　　为了进一步支持小型微利企业发展，经国务院批准，现就小型微利企业所得税政策通知如下：  　　一、自2012年1月1日至2015年12月31日，对年应纳税所得额低于6万元（含6万元）的小型微利企业，其所得减按50%计入应纳税所得额，按20%的税率缴纳企业所得税。  　　二、本通知所称小型微利企业，是指符合《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》及其实施条例，以及相关税收政策规定的小型微利企业。  　　请遵照执行。  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财政部  国家税务总局 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二○一一年十一月二十九日 |